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 가 기 술 자 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보완 (안 제11조)

1)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반영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및 폐지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 직무 중심의 국가기술자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변경 요청 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직무 분석할 수 있도록 개정

2) 주무부장관의 검정업무 위탁 희망기관 검토 사항 추가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이후 주무부장관이 검정업무 위탁희망기관을 제출하던 것을 종목 신설 시 미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검정업무 위탁기관이 조속히 선정되어 신설 완료 후 시행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해당 자격종목의”를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한 해당 자격 종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 위탁 희망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 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및 직무 난이도</u>	2.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한 해당 자격 종목의 -----
3. ~ 9.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u>검정업무 위탁 희망기관</u>
10. (생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연 락 처	(044) 202 - 7294